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 다.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 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5 및 6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를 “담배(”로 한다.

제3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재생원료 사용의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 법 제33조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자를 말한다.

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제48조제3항제4호의5를 제4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의6. 법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 확정,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및 실적 확인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담배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	---	-------------------------------------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 료·용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 ----- ----- ----- -----.
1. ~ 4. (생 락)	1. ~ 4. (현행과 같음)
5. <u>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u> <u>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u> <u>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u> <u>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u> <u>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u>	5. <u>담배</u> (----- ----- ----- ----- -----
6.·7. (생 락)	6.·7. (현행과 같음)
② (생 락)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 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 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 종) ----- ----- -----.
1. ~ 3. (생 락)	1. ~ 3. (현행과 같음)
4. <u>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u> <u>틱 물질 제조업</u>	<u><삭 제></u>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 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 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 -----

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 다. (생략)

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스틱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

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 4. (생략)

<신설>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재생원료 사용의무 제

품·용기의 제조자등) 법 제33

조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자를 말한다.

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4의4. (생략)

<신설>

<신설>

4의5. (생략)

5. ~ 20. (생략)

④·⑤ (생략)

부칙 (제26088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

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의6. 법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
 확정,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
 수 및 실적 확인

4의7. (현행 제4호의5와 같음)

5. ~ 20.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26088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 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 조치)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1